

지역문화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및 사례분석¹⁾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and Content Analysis of the Community Cultural Facilities

양 숙 미**, 정 건 채***

Yang, Sook-Mee, Chong, Geon Cha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nalyzing with present condition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people. The researcher investigate to that establishment ratio, accessibility, the induction and guidance, and safe walking passage security, and proper space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people was established by lawfully. The results as follows. In spite of the regulation established by law, regulations was not established 40% on region government.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people established Properly consider to the accessibility. But the size and height of the stand-up guide plate of the induction and guidance which corresponds in legal establishment standard of the handicapped people. then this research analyzes problems and suggests alternatives of the facilities.

키워드: 지역문화시설,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내용분석

Keywords : Local Cultural Facilities, Parking Area, Parking Area of the Handicapped, Present Condition, Content Analysis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최소제한적인 환경(at least environment)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디자인(universal design)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환경이 불편하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고,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물리적 환경은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성과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이다. 또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2010년 4월부터 법 실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 배리어프리(Barrier free)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나 이동도우미가 이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조홍중·방그레, 2008). 장애인, 특히 보행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자동차는 신체의 일부이며, 잃어버린 신체기능을 대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의 이용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일하게 비장애인과 겸용이 안 되는 편의시설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넓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대부터 수대분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이 일반주차구역보다 넓은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가 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휠체어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다(조홍중·방그레, 2008).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폭이 넓고,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박신일, 200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의 차별은 교통시설 제한, 편의시설 미비, 건축물 편의시설 미비, 주차제한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확보 및 이용 여부는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 본 논문은 2011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 개선 모니터링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 분석함

** 정희원,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정희원/이사,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법률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시설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문헌 검토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설기준과 관련된 법률은 「주차장법」,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등이 있다. 각 법률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와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는 너비와 길이가 다르다.

표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평행 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평행 주차형식의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2) 주차장의 설비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편의증진법 제4조의 설치규정은 첫째, 공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자리는 이를 1대로 본다.

셋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또한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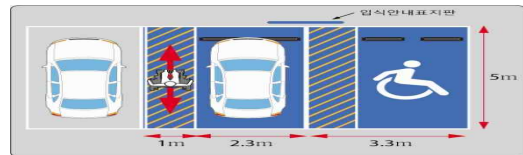
한편, 동일한 부설주차장임에도 그 소관 법률이 편의증진법이 아닌 교통약자법에 해당하는 여객시설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편의증진법 제4조 별표2.3.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교통약자법의 적용대상인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하여 도로 위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지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지를 주차장 내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은 첫째, 설치장소는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차공간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셋째, 유도 및 표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그림표지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한다. 넷째,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의 장애인전용주차장 평가항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27호)」에 의거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 인증서의 등급은 1등급(심사기준 만점의 90%)에서 3등급(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으로 하고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동 지침 제22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427호).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이 항목은 장애인이 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차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2.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산출 기준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점수
1급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6.0
2급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4.8
3급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 이하로 설치	4.2

(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른다. 불가피하게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3. 주차면수 확보

구분	주차면수 확보	평가항목점수
1급	규정비율의 100% 초과 확보	4.0
2급	규정비율의 100% 확보 (최소 1면이상 의무 설치)	3.2

(3) 주차구역 크기

이 항목은 주차구역에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인근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차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평가받을 수 있다.

표 4. 주차구역 크기

구분	주차구역 크기	점수
1급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4.0
2급	폭 3.3m, 길이 5.0m	3.2

(4) 보행안전 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설비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은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어서 접근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표 5. 보행안전 통로

구분	보행안전통로	점수
1급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폭1.8m이상) 연속적으로 설치	4.0
2급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폭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3.2
3급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폭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8

(5) 안내 및 유도표시

이 항목은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부착하여 식별하기 쉽게하고, 주차구역까지 적절한 유도표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표 6. 안내 및 유도표시

구분	안내 및 유도 표시	점수
1급	2급 기준 만족,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3.0
2급	3급 기준 만족, 바닥 색상 등 식별성 확보	2.4
3급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임(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2.1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 주차출입구와의 접근성, 유도 및 안내표시, 안전보행통로와 주차 공간 확보의 적정설치여부를 실측조사하기 위한 조사표를 구성하기 위해 법률문헌을 검토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측조사표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조사표 세부내용

영역	설치비율	접근성	유도/안내표지	안전보행통로	주차공간	총계
문항수	7	2	3	8	5	21

위의 조사표를 토대로 지역별, 건축물용도별로 구분하여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개소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은 전국 16개 시·도의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되, 각 지역별로 2~4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용도별로 <표 7>에서와 같이 관공서 5개소, 백화점 6개소, 할인마트 9개소, 공동주택 3개소, 의료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총 12개소, 고속도로휴게소 15개소 등 총 50개소²⁾이다.

표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 대상시설 (단위: 개소, %)

2) 조사대상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구축(보건복지부, 2010.4)”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설치 건물 42,275개소(공공 7,064, 민간 35,211) - 민간 35,211개소 중 50개소 표본추출함.

코드	용도별	빈도	비율
1	관공서	5	10.0
2	백화점	6	12.0
3	할인마트	9	18.0
4	고속도로휴게소	15	30.0
5	공동주택	3	6.0
6	의료시설	4	8.0
7	문화시설	4	8.0
8	체육시설	4	8.0
합계		50	100.0

또한 지역문화시설의 사례분석을 위해 지역별로 대표적인 문화시설 10개소를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장애인 당사자들을 조사원으로 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4. 연구결과

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설치현황

조사대상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개소의 기본적인 설치 현황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주차방식은 모두 자주식이었고, 주차형태는 직각주차 39개소(78%), 직각평행혼합(10%), 기타 6개소(12%)이다. 기타설치는 주차장 출입근처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하여 실제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거나, 법적으로 설치의무이나 필요가 없어서 설치하지 않은 곳 등이 포함된다. 설치위치는 지상 34개소(68%), 지하 7개소(14%), 혼합 9개소(18%)이다. 조사대상시설의 전체 주차구역은 32,299개 구역이었고, 이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185개로 설치비율이 평균 3.7%이다.

표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설치 구분		빈도	비율	합계
주차 방식	자주식	50	100.0	50/100.0
	기계식/반자주식	0/0	0.0/0.0	
주차 형태	직각주차	39	78.0	50/100.0
	평행주차	0	0.0	
	직각평행혼합	5	10.0	
주차 위치	기타	6	12.0	50/100.0
	지상	34	68.0	
	지하	7	14.0	
		혼합	9	18.0

4.2. 부설주차장 설치율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조례에 따라 2~4%의 장애인전용주차역을 설치해야 한다.

표 10. 부설주차장 설치조례 대비 준수율 (단위: 개소, %)

설치 비율		부설주차장 설치조례 대비 준수율		
		광역시	기초	전체/평균
적합설치*	빈도	15	29	44
	비율	30.0	58.0	44.0
부적합설치**	빈도	7	7	14
	비율	14.0	14.0	14.0
미설치***	빈도	1	0	1
	비율	2.0	0.0	1.0
비해당****	빈도	27	14	41
	비율	54.0	28.0	41.0
총 계	빈도	50	50	100
	비율	100.0	100.0	100.0

* 적합설치: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

** 부적합설치: 설치했으나 법적기준에 맞지 않음

*** 미설치: 설치하지 않음

**** 비해당: 법적기준 의무지만 불필요하여 미설치

위의 <표 10>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50개소 중 15개소(30.0%)가 법적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며, 나머지는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미설치 또는 법적기준에는 의무이나 해당 용도에서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비해당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9개소(58.0%)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설치 준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비해당'이 40%정도이므로 설치준수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4.3. 설치장소의 접근성

접근성은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출입구와의 근거리, 승강설비와의 근거리, 분산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설치장소의 접근성 (단위: 개소, %)

구분	설치장소 접근성				
	주출입구 근거리	승강설비 근거리	분산설치	전체/평균	
적합설치	빈도	42	31	41	114
	비율	84.0	62.0	80.0	76.0
부적합설치	빈도	5	5	7	17
	비율	10.0	10.0	14.0	11.3
미설치	빈도	1	1	1	3
	비율	2.0	2.0	2.0	2.0
비해당	빈도	2	13	1	16
	비율	4.0	26.0	2.0	10.7
총계	빈도	50	50	50	150
	비율	100.0	100.0	100.0	100.0

위의 표와 같이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곳은 42개소(84.0%)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부적합설치가 5개소(10.0%), 미설치가 1개소(2.0%), 비해당이 2개소(4.0%)로 나타났다.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서도 31개소(62.0%)가 적합설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위치에 따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분산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41개소(82.0%)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접근성은 조사대상시설의 76%가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위치를 지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출입구와 근거리 배치에 대해서도 84%의 조사대상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

4.4. 유도 및 안내표시

주차장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식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접근성 표지, 유도안내표시, 바닥노면표시, 입식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입식안내와 표지판 크기, 입식안내표지판 설치 또는 부착 높이, 입식안내표지 기재문구의 정확성 여부, 입식안내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 기재 유무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2>와 같이, 접근성 표시는 21개소(42.0%), 유도표시는 28개소(56.0%), 바닥표지 32개소(64.0%), 입식안내판 30개소(60.0%), 입식키 11개소(22.0%), 입식높이 8개소(16.0%), 문구내용 19개소(38.0%), 전화번호 기재 14개소(28.0%) 만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적합 설치, 미설치, 비해당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표시와 바닥표지, 입식안내판 등은 60%가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나, 입식안내판은 표지판의 크기와 높이가 법적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곳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판에 기재하지 않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유도 및 안내표시 (단위: 개소, %)

구분	유도 및 안내표시									
	접근성 표지	유도 표지	바닥 표지	입식안내판	입식키	입식높이	문구내용	전화번호	전체/평균	
적정	빈도	21	28	32	30	11	8	19	14	163
	비율	42.0	56.0	64.0	60.0	22.0	16.0	38.0	28.0	40.7
부적정	빈도	21	7	14	12	30	32	21	13	150
	비율	42.0	14.0	28.0	24.0	60.0	64.0	42.0	26.0	37.5
미설치	빈도	8	14	4	8	8	9	9	21	81
	비율	16.0	28.0	8.0	16.0	16.0	18.0	18.0	42.0	20.3
비해당	빈도	0	1	0	0	1	1	1	2	6
	비율	0.0	2.0	0.0	0.0	2.0	2.0	2.0	4.0	1.5
총계	빈도	50	50	50	50	50	50	50	50	40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준은 편의증진법 기준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ISA(국제접근성표시), DA(Disabled Access), KS A 0901 혼용함

4.5. 안전보행통로

장애인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보행안전통로 확보내용은 안전보행통로의 설치여부, 다른 차량의 간섭여부, 주차장과 출입구(또는 승강설비)의 높이차이 여부, 통로내의 장애물이 없는 유효폭의 확보 여부 등 5개 항목이다.

표 13. 안전보행통로 (단위: 개소, %)

구분	안전보행통로						
	안전통로	차량간섭	높이차이	기울기	유효폭	전체/평균	
적정	빈도	20	15	38	34	27	134
	비율	40.0	30.0	76.0	68.0	54.0	53.6
부적정	빈도	6	15	6	5	5	37
	비율	12.0	30.0	12.0	10.0	10.0	14.8
미설치	빈도	22	18	6	9	16	71
	비율	44.0	36.0	12.0	18.0	32.0	28.4
비해당	빈도	2	2	0	2	2	8
	비율	4.0	4.0	0.0	4.0	4.0	3.2
총계	빈도	50	50	50	50	50	25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표13>과 같이 안전보행통로는 적합설치 20개소(40.0%), 부적합 설치 6개소(12.0%), 미설치 22개소(44.0%)로 나타나 안전보행통로의 설치준수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차량과의 간섭여부는 적합설치 15개소(30.0%), 부적합 설치 15개소(30.0%), 미설치 18개소(36.0%)로 나타났다. 통로와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는 대체로 70%의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 유효폭 확보는 27개소만 적합하게 설치되었다.

즉 주차구역과 주출입구까지 보행안전통로의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차량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주차장 내에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행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6. 주차구역의 설치 규격

설치규격은 주차공간의 크기, 바닥면의 높이 차이, 바닥의 기울기 및 재질, 마감재 등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의 평탄 여부와 기울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여부, 평탄한 마감 여부 등은 조사대상시설의 90% 이상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주차구역의 크기는 32개소(64.0%)가 직각주차로 적합설치이며, 평행주차와 기타 형태의 주차구역, 법적기준에는 의무이나 해당 용도에서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비해당으로 나타났다.

표 14. 주차구역의 설치 규격 (단위: 개소, %)

구분	주차구역 설치 규격								
	크기			바다높이차	바다기울기	바닥재질	바닥마감	전체/평균	
	직각	평행	기타						
적정	빈도	32	0	7	48	46	43	45	221
	비율	64.0	0.0	14.0	96.0	92.0	86.0	90.0	63.1
부적정	빈도	9	3	2	1	3	6	4	28
	비율	18.0	6.0	4.0	2.0	6.0	12.0	8.0	8.0
미설치	빈도	1	0	2	1	1	1	1	7
	비율	2.0	0.0	4.0	2.0	2.0	2.0	2.0	2.0
비해당	빈도	8	47	39	0	0	0	0	94
	비율	16.0	94.0	78.0	0.0	0.0	0.0	0.0	26.9
총계	빈도	50	50	50	50	50	50	50	35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설치율	접근성	유도/안내표시	안전보행로	주차공간	전체평균	
적정	빈도	44	114	163	134	221	676
	비율	74.6	85.1	41.4	55.4	86.3	62.3
부적정	빈도	14	17	150	37	28	246
	비율	23.7	12.7	38.1	15.3	10.9	22.7
미설치	빈도	1	3	81	71	7	163
	비율	1.7	2.2	20.6	29.3	2.7	15.0
비해당	빈도	41	16	6	8	94	165
	비율	41.0	10.7	1.5	3.2	26.9	13.2
단순설치	빈도	58	131	313	171	249	922
	비율	98.3	97.8	79.4	70.7	97.3	85.0
총계	빈도	100	150	400	250	350	1,25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4.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 접근성, 유도 및 안내표시, 안전보행통로, 주차공간 등 설치현황을 종합하면 다음의 (그림 3), <표 15>와 같다.















그림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현황

4.8. 설치현황 사례분석

비교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잘 설치되었다고 평가되는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사진도표 1>과 같다.

사진도표 1. 지역문화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사례 내용분석

사례	내용분석
부산 문화 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구역의 크기, 설치장소 적정설치 -바닥노면표지, 입식 안내표지 규격 미 준수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에서 대공연장 주출입구까지 계단 유도점자블록 미설치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경사로 1/18 기울기 초과 설치 -완만한 경사로 이용을 위한 소강당 승가기 이용을 위한 접근 안내표지 미부착
국립 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설치율, 설치장소 적정함 -바닥 노면표지, 입식안내표지 법규의 규격 준수하지 않음.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수단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지형이 가파름. 경사로 기울기 1/18 초과함 -접근로 유도블록이 주출입구까지 연결되지 않음. 국립극장광장까지만 유도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단차제거 및 안내표시가 잘되어 있음
춘천 문화 예술 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 적정 -설치위치, 설치크기, 바닥노면표지, 입식안내표지 모두 법규 규격 미 준수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출입구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경사 규정 미준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수단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지형이 가파르고 경사로 기울기는 1/18초과함. -접근로상의 유도 점자블록 미설치 -차량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보·차도 구분이 일부분만 되어 있음.
인천 문화 예술 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적정 -주차구역의 설치위치, 크기/바닥 노면표지, 입식안내표지의 법규 규격 미 준수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바닥노면표지가 없는 곳도 있음, 의전차량보다 먼 거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수단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는 1/18이하로 평탄함. -횡단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 유도블록 적정 설치.
소리 문화의 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설치율 적정. -바닥 노면표지와 입식안내표지가 법규규격 미준수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수단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기울기는 1/12로 완화 적용 -경사로 길이가 30m 초과함. 휴식참 미설치 -접근로상의 점자 유도블록 미설치
세종 문화 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화문광장 설치로 부설지하주차장 폐쇄, 지하주차장용도변경, 전시장으로 사용 -세종로 주차장 이용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기울기 기준치1/18초과 -접근로 바닥틈새 2cm초과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연결 점자블록 미설치
예술의 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설치율 -주차구역 크기 3.3m × 5m 미준수 -주차장과 주출입구 안전보행통로도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없어 접근가능 -대중교통 이용시 주출입구까지 연결하는 점자블록미설치
경기 도 문화 의 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구역크기 및 설치장소 적정설치 -바닥노면표지와 입식안내표지 규격 미준수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안전사고의 위험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 접근로상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치인 1/18을 초과하여 설치됨 -교통수단에서 주출입구까지 연결하는 점자블록 미설치

	사례	분석
광주문화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용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 3.3m × 5m의 바닥 크기 미준수, -바닥 노면표지와 입식안내표지 규격 미준수 -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치인 1/18을 초과 - 교통수단에서 주출입구까지 연결하는 점자블록 미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장애인용 승강기부터 주출입구 근처 대표소로 유도 설치 - 표준형이 아닌 회색계열의 점자블록 사용
국립국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이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주차바닥 3.3m × 5m 크기, 바닥 노면표지와 입식안내표지 미준수 - 보행안전통로 일부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중 계단은 점자블록 유도 미설치 - 경사로 1/18 기울기 초과 설치 - 경사로의 길이 30m 초과, 휴식참 미설치. 휠체어 이용장애인 독립이동 불가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현황을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2~4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50개소의 대상 시설들을 분석한 결과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조례에 맞추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자치단체가 40% 가량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출입구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구역의 설치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유도 및 안내표시의 경우 입식안내판의 크기와 높이가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매우 많았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를 미기재, 보행안전통로에서의 유효폭 및 다른 차량의 간섭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접근성 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국제접근성표시(ISA)에 따라 공통된 표시를 함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ISA와 DA(Disabled Access, 기술표준원 KSA 0901)를 혼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바닥표시에 대한 색상과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다 상세히 추가되어 안내되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지판의 크기, 내용, 계도문, 신고 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행세칙에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의 바닥표시 색상이나 방법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등록 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 김용득·김미옥,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1995.
3. 박신일,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보건복지부, 2010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2010.
5.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실. <http://www.police.go.kr>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427호)
7.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9. 주차장법
10. 조홍중·방그레,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장애인주차공간의 이용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11. 徳田克己, 車いす使用者の交通安全ニーズに関する 研究報告書, 財団法人 國際交通安全學會, 2001.